

일본에 있어서의 환경공해소송의 현상과 과제

번역 : 김 중 수 *

<목차>

- I. 서 론
 - 1. 본 논문의 개요
 - 2. 일본에 있어서의 소송 - 공해소송과 환경소송
- II. 최근의 환경공해소송
 - 1. 공해 소송
 - 2. 폐기물 소송
 - 3. 토양오염소송
 - 4. 자연환경·문화환경보호
 - 5.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소송
 - 6. 원자력 발전소
- III. 일본의 환경공해소송의 특징
 - 1. 대량 원고
 - 2. 좁은 원고적격
 - 3. 대상 적격
 - 4. 재판의 역할과 새로운 정책
- IV. 결 론 - 남겨진 과제

I. 서 론

1. 본 논문의 개요

본 논문에서는 공해대책기본법이 폐지되고 환경기본법이 제정되었던 시기 이후의 재판의 동향을 개략함과 동시에 현재의 과제에 대해 고찰한다.

일본의 소송을 분류해보면, 공해건강·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 단국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공해·환경피해예방소송, 그리고 환경의 회복·재생에 관한 소송의 3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3개의 유형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소송을 개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또한, 법률상의 몇 개의 논점에 대하여 정리하고, 현재의 과제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일본 환경기본법의 범위 내에서 보자면, 원자력 문제는 환경법의 범위 밖의 문제이지만, 본 고에서는 원자력 문제도 포함하여 고찰한다.

2. 일본에 있어서의 소송 - 공해소송과 환경소송

4대공해소송이 화해에 의해서 결말이 난 것은 1970년대이다. 환경기본법의 제정은 1994년이며, 그 때에는 벌써 20년 가까이 시간이 경과하고 있었다. 동법이 제정되었던 시기에 정부는 「공해문제는 끝났다」라고 하여 환경문제의 비중은 공해방지로부터 환경에의 부하의 저감으로 옮겨 갔다. 그러나 공해피해에 관한 재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옷카이치 공해소송의 경험으로부터 「공해건강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해건강피해보상법으로 한다)이 제정되어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피해자의 보상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전국에서 이산화유황의 대기 중의 농도가 환경기준을 달성한 것을 기화로, 종래 동법상 제1종 지역의 보상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¹⁾의 지정이 해제되고, 그 결과 대기오염환자의 새로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 피해자 인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 때문에 대기오염 피해자는 재차 소송에

1) 공해건강피해보상법에서는, 공해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해서, 신청에 근거해 공해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된 환자에 대해서, 보상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었다. 보상대상지역은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었다. 제1종 지역은, 「사업활동 그 외의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상당 범위에 걸치는 현저한 대기의 오염이 생겨 그 영향에 의한 질병이 다발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지역」(동법 2조 1항)이다. 정령에 의해 유황산화물에 의한 오염농도가 높은 지역이 지정되었다. 해당 지정 지역에 상당 기간 거주하거나 혹은 그 지역 내에서 일하는 등의 사실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여, 심사의 결과 지정 질병이라고 인정되었을 경우, 보상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의한 구제를 독촉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기오염소송에서는 오키아이치 공해소송과 달리 손해배상과 함께 공해의 금지를 청구하고 있다.

미나타병에 관해서는 미나타병의 원인 기업인 찻소의 배상자 책임이 인정되어 화해계약에 근거한 환자에의 배상이 제도화된 이후에도, 보상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인정기준이나 국가의 책임을 둘러싸고 소송이 계속되었다.

또 새로운 문제로서 석면(asbestos)에 의한 환경피해에 관하여도 소송이 제기되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해 피해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공해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혹은 금지소송과 동시에, 자연파괴에 대해서도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각국에서 많은 자연보호소송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본에서의 특징을 보면, 그 중 하나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범위가 협소하고, 자연보호를 위한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지역 주민, 자연보호단체 혹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관계로, 결국 재판이 대등하게 의견을 말하고 판단을 요구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1950년대부터의 계획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계획이 확정된 후 10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하였는데도 해당 계획이 그대로 실시되는 예가 많다. 자연이 사라져 가는 한편으로, 시간의 경과와 함께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는 해당 공공사업에 대한 수요도 변화하고 있다. 거기에 관련되지 않더라도 일단 계획된 공공사업을 재검토하기 위한 절차도 없고, 사람들이 재검토를 요구하려면 재판을 통하여 다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새로운 사업계획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에 입안된 계획이 실시로 옮겨져질 단계에서 그 재검토를 요구하는 재판이 많다.

덧붙여 일본에는 분쟁해결을 위해서 국가에 공해등조정위원회가, 현에 공해분쟁처리위원회(임의)가 설치되어 있다. 근래에는 책임재정이나 원인재정을 공해등조정위원회에 요구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

나 「공해」에 관한 조정, 알선, 재정이므로 자연보호에 관한 분쟁의 처리는 관할외가 되고 있다.

II. 최근의 환경공해소송

1. 공해 소송

1) 자동차 배기가스공해(도로 공해)

공해건강피해보상법의 제1종 질병에 관한 지정지역이 해제된 다음은, 신규 환자에 대한 인정 업무는 행해지지 않게 되었다. 그 때문에 지정지역 해제 후, 새롭게 공해에 의해 호흡기계 질환을 앓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공해조정 이외에는 재판에 의한 구제가 필요했다. 그래서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 길가 부근에 거주하는 호흡기질환의 환자가 도로 설치관리자에 대해서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건강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과 도로공해의 금지를 청구하였다.²⁾

재판으로 쟁점이 된 점은 많이 있지만, 주요한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A) 원인 물질을 이산화질소(NO₂)와 SPM(대기중의 부유입자물질)로 하는 원고에 대해서, 도로 설치관리자는 이러한 원인 물질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다투었다. 재판소는 이산화질소와의 인과관계의 인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소극적이다. 그에 대하여 SPM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B) 인과관계의 쟁점의 하나로서, 영향이 미치는 범위(원인 물질의 도달

2) 아마가사키, 니시요도가와, 나고야남부, 카와사키, 그리고, 도쿄에서 소송이 제기 되었다. 도쿄를 제외한 이들 사안에서는 공장사업자와 도로설치관리자의 쌍방을 피고로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간선도로에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3단구조로 되어 있는 곳이 많고, 게다가, 주행자동차 총수에 있어서 트럭의 혼합률이 높다. 또한, 도쿄에는 주요한 공장은 없기 때문에, 도로설치관리자와 공장사업자, 그리고 자동차회사를 피고로 하고 있다.

접)가 문제되어 왔다. 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판결은 각각 길가로부터 30미터에서 50미터의 범위에서 영향이 미친다고 인정해 왔다.³⁾
 (C) 기관지계 질환의 경우, 흡연 습관과 위법성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흡연 습관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배기가스는 질병의 악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 위에 흡연 습관은 감액 사유로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공공사업을 둘러싼 공해소송에서는, 원고는 일관해서 손해배상과 아울러 공해의 금지를 요구하였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그것이 아마가사키 공해소송 지방법원판결⁴⁾, 나고야 남부소송 지방법원판결⁵⁾로 도로 공해의 금지가 인정되었다.⁶⁾ 지금까지의 판결에서는 금지의 내용이 되는 작위 내지 부작위를 특정하지 아니한 추상적 금지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거나⁷⁾, 혹은 민사소송에서 공권력의 발동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거

3) 다만, 나고야남부소송 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한층 더 범위를 좁게 보아 길가 20미터의 범위로 하고 있다. 또, 도쿄대기소송에 있어서의 원고는, 도쿄 23구 내에서는 도로가 종횡으로 연결되어 간선도로 도로망을 형성하고 있고, 도로에서는 한층 더 정체가 많이 발생할 정도의 교통량이 증가하고 자동차로부터 대량의 유해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도로변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가 면적으로 오염되고 있다고 하는 주장, 입증을 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길가 50m의 범위 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도쿄지판 헤세이 14년 10월 20일, 판례시보 1885호, 23면). 덧붙여 도로소송의 인과관계론에 대해서, 요시무라 료이치(吉村良一), 「대기오염공해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론—아마가사키·나고야 남부소송판결을 중심으로」, 법률시보 73권 3호, 62면; 와타나베 토모유키(渡邊知行), 「대기오염 공해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인정—아마가사키, 나고야 남부, 도쿄의 세 판결과 관련하여」, 나고야대학 법정논집 201호, 619면 등이 있다.

4) 고베지판 헤세이 12년(2000년) 1월 31일(판례 시보 1726호, 20면)

5) 나고야지판 헤세이 12년(2000년) 11월 27일(판례 시보 1746호, 3면)

6) 2개의 판결에 대해서는, 오오스기 마미(大杉麻美), 「아마가사키 대기오염소송·나고야 남부대기오염 소송—고베지판 헤세이 12.1.31 판시 1726호 20면, 나고야지판 헤세이 12.11.27 판시 1746호 3면」, (특집 중요환경판례의 최근의 동향) 인간환경문제연구회편, 「환경법연구」 29호, 1~6면, 유비각.

7) 국도43호선 소송 제1심 판결(고베지판 쇼와 6년 17일, 판례시보 1203호, 1면; 니시요도가와 공해 제1차 소송 판결(오사카지판 헤세이 3년 3월 29일, 판례시보 1383호, 22면) 등

나⁸⁾ 하는 이유로 금지청구를 부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개의 판결에서는 도로 설치관리자는 SPM을 일정 농도 이하로 하는 방법을 적절히 선택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관계되는 금지는 구체적인 청구라고 했던 것이다. 특히 나고야 남부소송 지방법원판결의 경우, 금지요건으로서의 공익성과의 관계를 기초로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판결은「도로의 기능, 효용의 중대, 중요성으로부터 침해행위의 중요성을 중시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본건 도로와의 관계에서 공해피해자로서 금지청구권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 있는 원고가 우연히 1명이라고 해도 「적어도 본건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그 입는 손해의 내용은 원고의 생명, 신체와 관련되는 것으로 회복곤란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유로 금지청구를 인용하였다. 한편 아마가사키 판결에서는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받는 편익과 불특정 다수의 도로변 주민의 불이익 양쪽 모두를 시야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본건 도로의 한도를 초과하는 공용을 계속하는 것은 도로변에 광범위하게 질환의 발증·악화를 가져오는 매우 강한 위법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덧붙여 위 도로의 한도를 넘는 공용을 공익상의 필요성 때문에 허용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원고의 개별 사정과의 관계가 아니고, 지역 전체의 오염 상황과 도로가 갖는 공익성을 형량하고 있다.

2) 미나마타병

미나마타병에 대해서는, 모든 형태의 소송이 제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미나마타병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구조는 지극히 특수하다. 공해건강피해보상법에 근거하는 인정수속을 거쳐 미나마타병 환자로서 인정된 피해자는, 동법에 근거하는 보상을 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나마타병 공해소송판결 후의 화해계약에 근거하는 손해배상을 칫소로부터 받을 것인지는 해당 피해자에게 맡길 수 있었다. 보상되는 금액

⁸⁾ 오사카공항 공해소송 최고재판소 판결(최대판 쇼와 56년 12월 16일, 판례시보 1025호, 39면). 이 논리는 도로소송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 칫소로부터의 손해배상으로서 받는 금액이 더 컸기 때문에 모든 인정 환자는 이 쪽을 선택했다. 인정기준은 공해건강피해보상법의 절차에 따라서 국가가 정하지만, 당초의 기준으로부터 변경한 것에 의해서, 많은 환자가 신청을 해도 인정이 거부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의 가부조차 장기에 걸쳐 판단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었다. 그래서 인정의 위법취소소송, 인정처분부작위 위법확인소송⁹⁾, 인정부작위위법손해배상소송¹⁰⁾이라고 하는 유형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또한, 처음부터 국가가 유기수은을 포함한 배수에 대한 규제를 해태했다고 하여 칸사이에 이주한 피해자가 부작위위법손해배상청구사건을 제기했다. 동최고재판소 판결¹¹⁾에서는, 이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승소하였다. 즉, 칫소에 의한 유기수은의 피해인 것이 판명된 시점에서, 공장배수에 관한 규제법이 제정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칫소 수은공장의 배수수역을 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인정기준에 대해서 현행 기준보다 완화한 기준을 적용했다.¹²⁾ 그 후, 동기준에 의해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원고가 3천명 이상의 환자에 이르고, 또한, 인정에 대한 의무이행소송도 제기되었다.

3) 석면(asbestos)

미국의 석면소송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일본에서는 이 문제가 사회 문제로서 대두된 것은 시민단체가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이나 공장노동자의 아내가 중피종 혹은 석면폐가 발병하고 있다는 것 밝

9) 쿠마모토지방법재판소 1974년12월13일 (원고청구인용·확정)

10) 최고재판소1991년4월26일 판결 (과기환송), 환송 후 최고재판소 2001년2월13일 판결 (원고패소)

11) 최고재판소 2004년10월15일 판결

12) 현행기준에서는 감각장해나 운동실조, 시야협착 등 복수의 증상의 조합을 필요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복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에 관해서도 미나마타병으로 판단하였다. 더욱이, 최고재판소판결 후 미나마타병으로 인정된 원고가 쿠마모토현에 대해서 인정의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해, 오사카지방법재판소 2010년7월16일 판결에서 현행기준에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했다.

힌 2004년의 이른바「석면 쇼크」로 불리는 사건에서부터이다. 오사카부 아마가사키시의 석면공장에 기인하는 석면피해가 시민단체의 조사에서 밝혀졌던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석면구제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제도적 구제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체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석면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어떤 노동에 일정기간 종사했던 증명(노동재해용), 석면사용공장 부근에 거주했던 증명(환경피해용)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 구제를 얻을 수 없다. 제도적 구제를 얻을 수 있다고 해도, 그 구제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수의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오사카부의 센난 지역(앞의 공장과는 다른 지역)에는, 석면포를 생산하고 있던 영세공장이 많이 모여 있어서 민간의료기관의 자주검진에 의해 동지역의 많은 거주자에게 중피종이나 석면폐의 환자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환자의 상당수는 영세공장의 공장주나 노동자였다. 공장주라고 해도 1명의 주인이 종업원 없이 생산을 하고 있는 자이거나, 1, 2명의 종업원과 함께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석면포 제조공장은 이미 도산하여 증명을 얻기 위해서 당시의 고용주를 찾는 것이 어렵고, 또 영세사업주의 경우에는 노동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제도적 구제가 곤란했다.

그래서 1인의 사업주를 포함한 노동자 및 인근 주민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석면에 관한 노동재해규제의 태만을 위법으로 하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오사카 지방법원판결¹³⁾에서는 규제의 부작위를 위법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했지만, 한편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1년 8월 25일, 오사카 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뒤집어 국가의 책임을 부정했다. 본건은 현재 최고재판소에 계속중이다.

이외에도 도쿄나 오사카에서 건설 노동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

¹³⁾ 오사카지판 헤세이 22년 5월 19일, 판례시보 2093호, 3면. 동 판결에 대해서, 요시무라 료이치(吉村良一), 「아스베스토(asbestos) 피해와 국가의 책임—센난 아스베스토(asbestos) 소송의 과제」, 법률시보 82권 2호, 52~56면 외.

고 있다.

4) 저주파음

최근 공장이나 가정의 기기로부터 나오는 저주파음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저주파음에 관한 분쟁에서는 저주파음이 발생하고 있는지 유무 그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것이 많다. 저주파음의 발생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인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다음의 기지소송에도 해당되지만, 후텐마 폭음소송¹⁴⁾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헬리콥터 특유의 저주파 소음에 대하여 피해를 인정했다.

덧붙여 저주파음에 대해서는 공해조정이 문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하철로부터의 저주파 소음에 대해서는 책임재정이 신청되었다.¹⁵⁾ 풍력 발전에 대해서도 저주파음이 문제시되어 피해자로부터 저주파음에 대한 원인재정이 신청된 사례가 있다.¹⁶⁾ 풍력발전의 저주파 소음에 대해서는 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의 조사·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다.

5) 기지 소송

기지 소송은 자위대, 주일미군기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다. 기지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은 심상하지 않고, 또 야간의 소음도 문제가 되어, 인근 주민에 의한 금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많다. 전술의 후텐마 기지소송에서는 원고는 소음의 측정을 청구하고 있다. 손해배상은 어느 사안에서도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장래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기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반복되고 있다.¹⁷⁾ 이에

14) 후쿠오카고등재판소 2010년7월29일 판결, 판례시보 2091호, 162면. 동 소송에서는 미군 쿠텐마비행장의 주변주민 396인이 국가를 상대로 미군기의 야간, 조기비행의 금지나 소음피해에 의한 손해배상 등을 구했다.

15) 공해등조정위원회 2003년3월31일 재정(기각)

16) 동 신청에 관해서는 2011년 2월, 신청인에 의해 신청이 취하되었다.

17) 요코타(재일미군) 기지소송은 1976년 최초로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비행의 금지도 함께 제소하고 1993년2월 최고재판소판결이 확정되었다. 1994년 제3원고단의 항소심판결이 확정되고 최초의 요코타 기지소송은 결론지워졌다.

대하여,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금지의 재판권도 문제되고¹⁸⁾, 금지를 인정받은 예는 없다.

손해배상소송으로서의 최대의 논점은 「위험에의 접근」이론의 적부이다.¹⁹⁾ 기지에 대해서는 위험에의 접근의 이론이 인정받지 못한 판결도 있다.²⁰⁾

1996년에는 재차 소송이 제기되어 2007년에 최고재판소판결이 나와 2번째 소송이 종료되었다. 양쪽의 어느 소송도 과거분의 손해배상은 인정되었지만 장래분의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다. 오키나와에서는, 제1회 오키나와 카테나(재일미군)기지소송은 1982년에 제소되어 1998년 항소심판결에서 확정되었다(과거분의 일부손해배상청구인용, 금지각하). 2000년 재차소송제기. 2009년 항소심판결(과거분인용, 금지각하)이 나와 원고가 장래분의 손해배상과 금지를 구해 상고했지만 2011년 1월29일 상고를 기각. 기지소송으로서는 기타 코마츠 기지, 아즈키 기지 등의 소음에 관해서 제소되어 왔다.

- 18) 요시무라 료이치(吉村良一), 「기지 소음 공해의 금지—미군기에 의한 소음을 중심으로」, 立命館法学 292호, 452~482면 참조.
- 19) 「위험에의 접근」이란, 소음을 알고 혹은 아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지역에 이동해 온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오사카공항공해 소송 최고재판소판결에서 적용되었다. 요코타 기지 소송판결에서 「사법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타당하기 때문에 위험에 접근한 자가 그 존재를 인식했지만 무리하게 그것에 의한 피해를 용인한 경우에는 사정의 여하에 의해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경우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면책의 법리)」。 또한, 「가해자의 면책까지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험에 접근한 자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는 과실에 의해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해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일부를 부담시켜야 한다(감액의 법리)」라 판시하고 있다.
- 20) 각주 12)의 후텐마 기지 폭음소송 후쿠오카고등법원판결은, 「오키나와 모토지마 중부 지역에 있어서는, 후텐마 비행장의 소음영향을 받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원래 손해회피의 가능성이 부족한 가운데, 원고들은 지연상, 혈연상의 이유로 혹은 생활상, 직업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후텐마 비행장 주변에 이사한 것이며, 특별히 비난받을 사정을 찾을 수 없는 반면, 피고측에서는 근접한 카테나 비행장에 대해서, 소음피해가 위법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사법판단이 3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텐마 비행장에 대해 발본적인 소음대책의 강구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고, 아직도 스스로가 정한 환경기준의 기준치도 달성하고 있지 못하는 등의 사정을 보면, 원고들에게 후텐마 비행장의 본건 항공기 소음에 의한 피해를 수인해야 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위험에의 접근의 법리에 의하여 면책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카테나 기지 소음금지소송 나하시방법원판결(헤세이 17년 2월 17일, 송무월보 52권 1호, 1면)도 또한 위험에의 접근의 이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기지소송으로서는 소음소송 이외에는, 헤노코 기지건설을 둘러싸고 이른바 유곤(포유동물)소송²¹⁾이라 불리는 기지건설에 의한 자연파괴를 위법으로 하는 기지건설금지소송이 있다.

2. 폐기물 소송

폐기물 처분을 둘러싼 소송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폐기물의 최종처분장은 생산활동의 왕성한 도시지역이 아닌, 동북, 규슈산지 등 인가가 적은 산간부의 골짜기에 설치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골짜기의 물을 상수원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자주 반대운동이 생기고, 주민이 건설이나 조업의 금지소송을 중심으로, 시설설치허가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원고승소가 되는 사건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²²⁾

한편, 시설설치가 불허가된 사업자로부터의 소도 적지 않다. 도부현에서는 법령이 정하는 요건에서는 부족하다고 하여, 요강을 마련하여 부가적인 요건을 정해 허가 신청시에 동요강에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판결은 관계되는 부가적인 요건은 위법으로서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인정해 왔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자치체는 수도법에 근거하는 상수원 조례를 정해 폐기물 최종처분장의 규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 조례를 둘러싸고 최

21) 이 사안에 관해서는, 미국에서도 오키나와현 나고시 헤노코에 계획되고 있는 미군 후텐마 비행장 대체시설의 건설이 미국 문화재보호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과 동등한 내용을 갖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오키나와 유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는 확인청구를 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기지건설에 의한 유곤에의 영향을 회피하는 「고려」를 하도록 명한 다음, 환경영향평가서를 동 지방법원에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22) 대표적인 판결로서 센다이지 결정 헤세이 4년 2월 28일, 판례시보 1429호, 109면. 이 사건은 처분장에서 흘러나오는 오수에 의해서 음료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등 평온하게 살 권리가 침해된다고 하여 금지를 인정했다. 아와지 다케히사(淡路剛久), 「폐기물 처분장을 둘러싼 재판의 동향」, 환경과 공해 31권 2호, 12면 참조.

고재판소 판결이 내려진 사안에서, 조례의 존재에 대해서는 위법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상수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 자체를 위법으로 하지 않았다.²³⁾

불법투기에 관해서는, 인근 주민에 의한 불법투기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불법투기를 위법으로 보고 철거를 명한 판결도 있었지만, 상대방을 특정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인근 주민에 의한 소송은 적은 상황이다. 그 대부분이 불법투기를 둘러싼 형사재판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리사이클 자재로서 인정을 받은 「제품」(페로실트)이 실질적으로는 유해산업폐기물 그 자체이며, 그것을 노반재로서 이용한 것을 불법투기로 보아 제품을 제조한 기업의 간부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다.²⁴⁾

3. 토양오염소송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토양오염대책법이 제정되어 토양오염대책으로서 오염토지의 제거가 행해지게 되고, 토양대책을 실시한 자가 그 오염의 원인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 소송이 나오게 되었다. 배출자로서 특정된 경우에는 배출자 책임으로서 인정되는 예가 많다. 그런데 자치체가 구입한 토지가 그 후의 규정의 개정으로 유해물질로서 인정된 물질(불소)로 오염된 것이 판명된 사례로, 일전에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왔다.²⁵⁾ 같은 토지의 구입 전의 소유자이며 오염원인자인 화학회사에 관해서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품질이 예정되어 있었는가는 계약체결 당시의 사회통념을 참작해 판단해야 하고, 매매계약시에 위험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상품에 하자가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고,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토지의 숨은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좋다고 판시하였다.

23) 최고재판소 해세이 16(2004년) 12월 24일(나가시마쵸 수도수원보호조례 판결), 판례시보 1882호, 3면.

24) 츠지방재판소 2007년 6월 25일 판결(부공장장 징역 2년 실행 판결) 미계재

25) 최고재판소 2010년 6월 1일 판결

4. 자연환경·문화환경보호

댐, 도로, 임간도로, 골프장을 둘러싸고, 자연파괴의 방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재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업허가의 취소를 다룬 경우, 주민소송으로서 재무회계상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다룬 경우가 있다. 전자의 초기의 토지수용재결취소사건(닛코타로스기사건) 도쿄고등법원판결²⁶⁾에서는, 도로확장에 있어서 토지수용사업인정의 요건인「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판단하는 때에 역사적 문화적 환경도 배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인정을 취소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 다음에는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을 다투게 되었다.

후자의 예로서, 도로에 있는 임야산물 매도계약 및 청부계약에 근거해 본래 빛을 받은 부분의 벌목만을 할 계획이었으나 모두 벌목하게 된 것이 조례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주민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아와세히가타 매립금지 소송(후술) 또한 주민소송으로서 제기된 사건이다. 주민소송에서는 원고적격의 요건으로서 해당 자치체의 주민일 것만이 요구되기 때문에 후술과 같이 자연보호소송으로서 이용된다.

이와 달리, 실질적 자연보호소송인 조수막이제방 배수문의 개문을 요구한 소송에서는, 어민이 원고가 되어 환경악화에 의한 어업피해를 주장하였다. 동 재판에서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3년 이내에 5년간 개문할 것을 명했다.²⁷⁾

26) 도쿄고등재판소 1973년 7월 13일 판결, 판례 타임즈 279호, 124면

27)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2010년 12월 6일 판결(확정). 다만, 그 후 아리아케해의 어업부진은 국영이사하야간척사업(나가사키현)이 원인으로서 나가사키이사하야와 시가현 타로우초의 어업자 41인이 국가를 상대로 조수막이제방배수문의 즉시개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나가사키지방법재판소(2011년 6월 27일)는 2가지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져 금후 사업과 어업피해와의 원인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사업에는 공공성이 있다고 하여 「개문에 이유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원고는 항소하였다. 한편, 간척지에 사는 농민이 개문금지를 구해 나가사키지방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

또한, 자연보호소송에서는 자연의 권리 소송으로서 생물을 원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지만, 모두 각하되고 있다. 수도권 중앙연락도로(권중도, 수도권의 가장 밖의 순환도로)의 건설의 중지를 구하는 다양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지만, 원고로서 생물 뿐만 아니라, 텐쿠(상상의 지역괴물)나 성(城)이 원고가 되어 모두 각하되었다. 자연보호단체도 원고가 되고 있지만, 앞의 생물이나 문화적 시설과 함께 각하되고 있다.

5.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소송

일본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의 위법을 환경영향평가 절차위반으로서 직접 다투는 소송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친 사업의 금지소송 혹은 인허가의 취소소송에 대하여 위법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의 불비를 다투게 된다. 실제 원고인 주민 등이 환경영향평가의 방법의 불비를 다투는 사례는 적지 않다. 그러나 판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위법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없다.²⁸⁾

한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사업을 대상규모미만으로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주민 등이 관계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 재판으로 시정시키려면 의도적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외로 한 것을 위법으로 하여 해당 사업의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든가, 혹은 금지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관계되는 탈법행위를 위법으로 하는 판례는 볼 수 없다.²⁹⁾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조에서 사람들의 환경영

28) 아가세히가타 매립에 관한 시의 재정지출을 위법으로 하는 주민소송이 제기되어 동 사건에서는 지방재판소, 고등재판소 두 곳에서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었다. 소송중 원고는 환경영향평가의 불비를 주장했다지만, 판결은 이 위법은 인정하지 않았다(아와세히가타 매립공금지출금지등 청구 항소사건, 후쿠오카고등재판소 2009년 10월 5일 판결, 판례시보 2066호, 3면).

29) 각주 34)의 이쿠타 녹지소송은 동 녹지 내의 오카모토 다로 미술관 건설 금지소송이지만, 카와사키시 환경영향조사조례가 정하는 개발행위의 토지면적 1만 평방미터 이상이라고 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적용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재 운반용 설치 도로분 1620 평방미터를 개발면적에서 제외했다. 개발자인 카와사키시는 이것에 대해, 공사 종료 후에는 철거하므로 개발구역은 아니고,

향에 대한 의견참가가 권리로서 인정되지만, 법원은 그것을 정보제공참가 이상의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6.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의 설치허가의 취소 혹은 건설의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은 지금까지 많이 제기되어 왔다. 이카타 원자력발전소송이 원자력발전 재판으로서 최초의 사례이지만, 그 이카타 원자력발전소송 최고재판소 판결³⁰⁾에서는 고도로 전문적인 과학기술적 판단에 대해 안전심사기준의 합리성 혹은 절차의 적정성의 관점에서 위법성의 판단을 하는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판단에서는 이카타 원자력발전 최고재판소판결을 포함해서 원자력발전소의 취소를 인정한 판결은 시가 원자력발전소 2호로의 건설의 금지소송인 카나자와 지방법원 판결이 유일한 것이다.³¹⁾ 이 사안도 최고재판소에 두 번 갔지만, 최종적으로는 원고 패소로 되었다. 그 외, 고속증식로 「몬주」건설금지소송 제2심 판결이 금지를 인정하고 있다.

원자력 사고에 있어서는, JCO 사고가 사망자를 낸 예에서, 사고 후 소문에 의한 피해에 관한 재판이 8건 일었다. 닛토업자, 수산가공업자등이 거래처로부터 인수를 거부당해 매각하지 못하고 소각처분했다고 하는 피해를 주장했다. 이는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심이 되지만, 원고가 거래처에 대해 더욱 인수를 요구하고 교섭하는 등의 노력을 태만히 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을 해도 더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고 하여, 원고 주장의 손해에는 본건 사고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예도

개발행위도 아니라고 했다.

30) 최고재판소 1992년 10월 29일 판결, 판례시보 1441호, 37면.

31) 카나자와지방법원판결 2006년 3월 24일 판결, 판례시보 1930호, 25면. 동 판결은 2호기 부지에서 일어난 지진의 위험성과 내진설계에 관해서 검토. 내진설계가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운전 중에 대규모 활동을 할 수 있는 진원의 지진단층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을 것, 직하지진의 상정이 충분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있다.³²⁾

후술과 같이, 일본의 원고 적격의 협소가 문제가 되지만, 이카타 원자력 발전소송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인근 주민에 대해서 설치허가취소소송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였고, 몬쥬소송 최고재판소 판결에서는, 「몬쥬」로부터 58 km 떨어진 주민에까지 설치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³³⁾

32) 나고야 고등재판소 헤세이 15년 1월 27일, 판례시보 1818호, 3면. 원자로 설치허가 무효확인소송으로 제기되었지만, 무효의 요건으로서 일반적으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겨져 왔지만, 원자로의 잠재적인 위험성의 중대함으로부터, 하자의 중대성만을 요건으로 하면 충분하다. 즉, 명백성은 필요없다고 여겨졌다.

33) 최고재판소 1992년 9월 22일, 판례시보 1437호, 29면. 동 판결은 「해당 주민의 거주 지역이, 앞에서 본 원자로 사고 등에 의한 재해에 의해 직접적이고 한편 중대한 피해를 받는 것과 상정되는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해당 원자로의 종류, 구조, 규모 등의 해당 원자로에 관한 구체적인 제조건을 고려한 다음, 해당 주민의 거주 지역과 원자로의 위치와의 거리 관계를 중심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종래보다 넓은 범위의 주민에도 원고적격을 인정했던 것이다. 이 판결전의 당시의 학설을 봐도 원자력 발전소송에 대하여 주민에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에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시오노 히로시(塩野宏), 「원자력법의 절차에 있어서의 재판소의 역할과 활동」; 카나자와 이치로(金沢一郎)편, 「일독 비교 원자력법」, 47면; 아베 야스타카(阿部泰隆), 「원자력 발전소송을 둘러싼 법률상의 논점(이카타원전소송판결<특집>)」, *주리스트* 668호, 17면; 동 「원자력 발전소송을 둘러싼 법률 문제 (1)」, 판례시보 1142호(판례평석 314호), 166면; 동 「토카이 원자력 발전소송 제 1 심 판결의 의미」, *주리스트* 843호, 73면; 동 「원자로 설치허가 무효확인소송의 원고 적격」, *법학교실* 110호, 86면; 야마무라 츠네토시(山村恒年), 「원자로 설치허가취소소송의 원고 적격(이카타원전소송판결을 둘러싸고 <특집>)」, 362호, 10면; 하라다 나오히코(原田尚彦), 「원자로 설치허가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법학교실* 20호, 87면; 스토 시게유키(首藤重幸), 「「몬쥬」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의 검토」, *법률시보* 61권 12호, 45면 등이 있다. 동판결에 대한 판례 평석에, 쿠와하라 유신(桑原勇進), 「원자로 설치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변주민의 소의 이익」, *법학협회잡지* 111권 12호, 1887~1900면; 다카하시 시게루(高橋滋), 「1. 설치허가신청에 관한 원자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 원자로설치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에 대한 행정사건소송법 36조에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자」 2. 설치허가신청에 관한 원자로(고속증식로)에서 약 29km 내지 약 58km 범위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

현재 하마오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조업금지청구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고 있다. 덧붙여 제1심 판결은 원고 패소가 내려졌다. 또한, 현재 건설준비행위가 진행중인 우와세키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매립 청구를 자연의 권리 소송으로서 제기되고 있다.³⁴⁾

III. 일본의 환경공해소송의 특징

1. 대량 원고

대표자 소송이라고 하는 유형이 없는 일본에서는, 공해피해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각각의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 하지 않으면 안된다. 도쿄공해소송은 100명 이상의 원고가 동일한 변호사들에게 의뢰하였고, 앞에서 언급한 국가의 부작위를 위법으로 인정한 미나마타병 칸사이소최고재판소 판결 이후의 미나마타병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3000명 가까운 원고가 차례차례 소송을 제기하였고 시라누이 소송 원고단을 결성했다. 게다가 신카데나 기지소송도 5500명이라고 하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한 번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변호단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제1진, 제2진의 형태로 원고로서 이름을 올린 사람이 일정수 모인 단계에서 제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확실히 일본식 소송방

는 주민이 위 원자로 설치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에 대한 행정사건 소송법 36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민상법잡지 109권 2호, 302~315면 등을 참조. 덧붙여 각주 28) 판결에서는 700킬로미터의 범위내의 원고 모두에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몬쥬 사건은 본안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34) 이와이시마 주민, 그 외 나가시마의 자연의 은혜를 향수하는, 본건 원자력 발전에 의한 사고에 의해 생명 신체의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는 단체 및 개인과 함께, 상팽이, 뿔쇠오리, 야시마이신 근사종, 활유어, 삼나무말을 원고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매립면허의 취소에 대해서는, 자연은 커녕 주민에 대해서도, 매립 후의 토지이용과 관련되는 이익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일정한 이점도 있다. 개개의 원고가 당사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소송지원을 요구하는 활동에 대해서 주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원고가 되는 것은 일본에서는 상당한 용기와 각오가 있어야 하므로, 많다고 말하더라도 피해자 전체로 보면 소수의 사람 밖에 원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나마타병 손해배상 판결 후에 원고와 찻소는, 피고인 찻소가 원고 이외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판결과 함께 손해배상을 지불하는 취지의 화해계약을 체결했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공해소송은 대표자 소송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2. 좁은 원고적격

전술대로, 지금까지의 일본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서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배려하는 구조가 없어서, 재판이 그 역할을 해왔다. 원고 주민은 재판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간신히 의견을 대등하게 이야기하는 지위를 획득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원고적격 등의 소송 요건은 그 지위를 얻기 위한 최대의 관문이 되어 가로막고 있다.

환경기본법은 환경에의 부하를 최소로 하고, 인류의 생존의 기반인 생태계의 유지를 그 이념으로서 내걸고, 그것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공평역할 분담으로 가고 가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3조, 4조). 하지만,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도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주장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환경권을 부정하는 지금까지의 판결은 공통적으로 그 내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고 있다. 아마미 흑토끼 소송 후쿠오카고등법원 판결에서는 대변자로서의 시민이나 자연보호단체의 원고 적격에 대해서, 「자연향유권」에 근거하는 원고적격을 이유 없다고 하여 각하했다.³⁵⁾ 이사하야

³⁵⁾ 동 판결에서는, 자연공유의 권리의 대변자로서의 시민이나 NPO에 대해서, 「자연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법규의 여하에 관계없이, 「자연향유권」을 근거로 「자연의 권리」를 대변하는 시민이나 환경

만의 간척에 관한 소송은 인격권이나 재산권은 인정하지만 환경권이나 자연향유권 혹은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재판소의 입장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예이다. 이사하야만의 간척에 대해서는 자연보호의 관점에서 많은 반대 운동이 있었다. 그 중에서 이른바 쟁뚱어 소송이라고 하는, 이사하야만의 히카타에 사는 쟁뚱어(물고기의 일종) 등의 물고기를 원고로서 간척금지를 청구한 자연의 권리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민사소송법상 소권은 사람 밖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각하되었다.³⁶⁾ 이에 대하여 먼저 제기된 이사하야만의 어민이 원고가 된 소송에서는 환경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방의 폐문에 의해 어업피해의 우려가 있는 것, 즉 어민의 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한편, 인격권이나 재산권으로부터 보다 공공적인 이익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국립경관소송 최고재판소 판결³⁷⁾(민사소송)이 주민의 경관에 대한 이익을 인정하였고,³⁸⁾ 계속해서 후쿠야마시 남부의 경승지 매립면허처분 금지소송 히로시마지방법원판결³⁹⁾이 토모 지구의 사람들

NGO가 당연히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하는 해석을 취하는 것은 행정사건소송법으로 인정되지 않은 객관소송(개인의 개인적 이익과 관련이 없는 정책의 위헌, 위법을 주장하는 소송)을 긍정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고, 현행 법제와 적합하지 않고, 상당하지 않다」고 하여, 원고적격을 부정하고 있다. 권양도 사업인정취소청구사건(도쿄지방법재판소 헤세이 22년 9월 1일, 판례시보 2107호, 22면)에서는 자연보호단체의 원고적격을 부정했다.

- 36) 나가사키지판 헤세이 17(2005)년 3월 15일(미게재)은, 물고기의 원고적격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마미 흑토끼 소송(카고시마지판 헤세이 13(2001)년 1월 22일, 미게재)을 시작으로 하고, 이쿠타 녹지소송(요코하마지판 헤세이 9(1997)년 9월 3일 판례, 지방자치 173호, 73면 판례소개), 큰기러기 소송(도쿄고판 헤세이 8(1996)년 4월 23일, 판례 타임즈 957호, 194면) 등 자연을 원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왔지만, 모두 각하 되고 있다.
- 37) 최고판 헤세이 18(2006)년 3월 30일, 판례시보 1930호, 3면. 마치나미 보존 지구내의 맨션건축에 관해서 말한 것 이상 높이의 건축금지를 명한 나고야지판 헤세이 15(2003)년 3월 31일, 판례타임즈 1119호, 278면이 있다.
- 38) 조망권은 경관권에 앞서 재산권으로부터 독립한 권리로서 인정되어 왔다. 예를 들어, 요코하마지판, 판례시보 720호, 81면, 오다와라지판 헤세이 21(2009)년 4월 6일, 판례시보 2044호, 111면 참조. 그에 대하고, 入浜權은 부정되었다(長浜町入り浜權訴訟, 마즈야마지판 쇼와 53년 5월 29일, 판례시보 889호, 3면).

의 토모 경관에 관한 이익을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으로서 인정하였다.

행정사건에서는, 행정사건소송법의 원고 적격의 요건이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을 가지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그 해석도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공해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도시계획사업 인가취소와의 관계에서는 동인가가 환경에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가의 대상이 된 도시계획 도로의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았다.⁴⁰⁾ 그러나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에 의해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관련 법규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 최초의 사례로서 도로와 철도의 입체 교차화사업 도시계획사업 인정취소청구 소송 대법정판결⁴¹⁾이 있고, 공해방지계획이 정해져 있는 지역의 주민으로 직접 소음피해 등이 미치는 범위의 주민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었다. 덧붙여 아이누(홋카이도의 주민)의 문화적 환경에 보호법이익을 인정한 판결이 있다.⁴²⁾

3. 대상 적격

행정사건소송법에서는 대상적격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어, 환경기준의 완화의 위법을 다룬 사건에서는, 특정한 자의 특정한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면, 제소할 수 없다고 하여 각하하고 있다. 같이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의 지정 등의 행정계획의 대상적격성에 엄격한 제약이 있어 초기의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곤란하다.

39) 히로시마지판 헤세이 22년 8월 1일, 판례시보 2060호, 3면

40) 매립면허취소소송에서는, 매립대상구역에 어업권을 가지는 어업협동조합 이외의, 환경영향을 받을 구역에 어업권을 가지는 사람이나 매립 후의 공장 등의 입지에 의해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41) 최고재판소 헤세이 18(2006)년 3월 30일 판결, 판례시보 1931호, 3면.

42) 삿포로지판 헤세이 9(1997)년 3월 27일, 1598호, 33면. 동 사건은 댐 건설을 위한 수용제결의 취소를 요구한 사례이다. 아이누 문화의 침해를 위법으로 하면서 사정판결로 끝났다.

4. 재판의 역할과 새로운 정책

재판의 역할의 일본식 특징을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판은 판결에 의해서 배상금 등의 청구 내용을 획득하는 것에 본래의 의미가 있다. 동시에 재판에 의해 원고가 거대기업이나 국가와 대등하게 스스로의 의견을 주장하여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서의 기능을 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재판은 원인자에게 피해에 대한 구제책임을 인정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원고는 판결이 배상책임 혹은 금지책임을 인용 했다면 당사자의 화해계약 혹은 협정으로 장래의 과제에 대해 협정한다. 이따이이따이병 재판의 종결 후에,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어 ① 원고 농지의 오염토양의 객토 및 복토, ② 원고, 원고가 지정하는 과학자 및 변호사의 피고공장지역에의 출입과 거기에 기초를 두는 공해근절을 위한 원탁회의의 실시가 이루어졌다. 미나마타병 소송에서는 전술대로 원고 이외의 미나마타병 환자에 대해서도 피고 기업은 판결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협정이 체결되었다.

게다가 도로소송에서는, 손해배상만 인정한 카와사키 공해소송에서도 도로공해의 해소를 위해서 화해협정을 체결하고, 중증의 오염원인 산업도로의 차선 삭감이나 녹화사업,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조성의 확대 등을 실현하고 있다.⁴³⁾ 아마가사키 소송 등 금지가 인정된 곳은 그 내용의 실현을 위해서 원고를 포함한 정책협의를 하는 것이 협정되었다. 도쿄공해소송에서는 동소송의 원고에 공해건강보상법의 지역지정해제 후의 환자로 이른바 「미인정 환자」가 대부분 있었다. 그래서 원고에게 있어서는 도로공해피해의 치료와 관련되는 의료비를 포함한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판결 후의 과제가 되었다. 동소송 판결에서는 자동차 회사의 사회적 책임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손해배상의 지불의무는 없지만, 사회적 책임에 근거하여 피고인 국가, 도쿄도와 함께 새로운 제도를 제정하는 것으로 화해 협정이 성립했던 것이

43) 篠原 義仁, 『よみがえれ青い空 川崎公害裁判からまちづくりへ』, 花伝社, 2007.

다. 제도로서는 기금으로 건강보험의 자기부담분을 급부한다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원의 판결은 공해피해에의 책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동종의 사건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만들기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⁴⁴⁾

IV. 결 론 - 남겨진 과제

남겨진 과제라고 하기에는 남은 부분이 지나치게 많다. 그 중에 네 가지의 과제를 언급해 두는 것으로 정리하고 싶다.

원고적격과 관련하여서는, 환경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가 오랜 세월의 과제이다. 환경권 혹은 자연향유권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 재판을 통해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하다. 자연보호에 관해서는 권리의 주체로서 자연보호단체가 적당하다는 관점에서 단체에 소권을 주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환경에의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계획에 대한 소송 혹은 규칙 등에 대한 소송이 인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원자력 소송, 바이오 연구시설소송 혹은 화학물질소송과 같이, 지극히 고도의 과학기술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위법성 심사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더 문제가 된다. 그 내용 심사와 적절한 절차라고 하는 관점에서 심사를 어떻게 조합해 갈지가 과제가 되고 있다.

과학기술적인 논점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공해등조정위원회에 원인 재정을 신청하는 케이스가 조금씩이지만 증가하고 있다. 이사하야만 간척 소송에서는 재판을 하는 한편으로, 공해등조정위원회에 제방이 어업에 피

44) 아와지 다케히사, 「「制度改革訴訟」と権利の実現-尼崎道路公害差止め判決に焦点を合わせて-」, Law & Practice, 133-153면.

해를 주고 있는 것에 관한 원인재정을 신청하여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도 그 하나이다. 공해등조정위원회를 개편하여 환경전반에 대해서 관할권을 주어 재판과 ADR의 적절한 조합을 지향하는 일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상 과제는 산적해 있다. 마지막으로 단지 해석만으로는 문제 해결의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법적인 해결이 아울러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해 둔다.